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854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윤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호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5,294,3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294,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11. 2. 23. C에게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3. 2. 23., 이자 연 8.8%로 정하여 대출하고, 이후 2012. 8. 7. 6,500,000원을 변동금리로 정하여 추가 대출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22. 9. 6.을 기준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15,294,336원이다. 나. C은 2005. 4. 1.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와 C은 2018. 1. 12. 각 1/2지분씩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C은 2021. 6. 18.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1/2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C은 2022. 2. 18.경 사망하였다.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D(딸)는 2022. 5. 18. C의 적극재산(자동차와 예금)을 16,396,731원으로, 소극재산(피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포함한 금융기관 채무)을 117,730,744원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2. 6. 2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혼인기간 중 주식 투자실패로 재산을 탕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가 C의 채무를 여러 차례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C 명의의 1/2지분은 피고가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을 제3, 4, 6 내지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피고와 C은 혼인 5년 후인 2010. 1. 20. 시흥시 E아파트 F호의 소유권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
- 2) C은 2012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량의 주식투자를 하였다. 혼인 기간 중 피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3) 피고와 C은 2017년 말 위 1)항의 E아파트를 매각한 대금과 담보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2018. 1. 1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각 1/2지분씩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담보대출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피고는 2021. 6. 11. 원고로부터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G, H 등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 5) 피고는 2022. 3. 30.경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순위 근저당권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다. 판 단

C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대신 변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종전에 피고와 C이 공동 소유하던 E아파트의 매각자금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되었고, 피고의 주식 투자 실패는 위 E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 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E아파트가 종전부터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의 고유 재산으로서 C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C으로부터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아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C이 채무자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무렵 또는 그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취득할 무렵의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C의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담보대출을 변제하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 소유에 따라 후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자연스러운 책임부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C이 공동 소유하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선의 수익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으로부터 1/2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에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 외에는 C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 단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제3항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을 비롯하여 C의 사망 후에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6. 18. 사해행위(증여)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2. 3. 30.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반환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사해행위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47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해도 192,000,000원이므로, 그 차액인 28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C의 1/2지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으로 구하는 피보전채권 15,294,336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와 C 간의 2021. 6. 18.자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 15,294,3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5,294,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동

[도로명 주소] 경기도 시흥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29층

공동주택(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대 78,2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65.980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8236분의 37.9412

끝.

